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협력업체, 대체산업, 전력계통 영향분석 등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유지·신규채용 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

원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협력업체의 업종전환·경영합리화 과정에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고용관계 유지 시의 자금 지원, 발전사업자와 기존 협력업체 간의 수의계약 특례 및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재배치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자금 보조·융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매각,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II. 검토의견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안 제8조)와 지역전환 협의체의 설치 주체(안 제10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안 제21조제1항)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고, 지역활성화 사업 제안 주체(안 제16조제2항)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 등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것인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임.

이에 안 제8조제1항에서 “광역시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도지사”로 약칭하여 이하의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안 제16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였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광역시방자치단체의 장</u>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생략)
③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광역시방자치단체의 장</u> 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폐지지역의 관할 <u>시장·군수·구청장</u> 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u>노동자·주민·협력업체</u>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시·도지사는</u>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폐지지역의 관할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u> 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u>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주민·협력업체</u>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광역시방자치단체의 장</u> 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환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시·도지사는</u>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환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생략)	⑤ (생략)
제10조(지역전환 협의체)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광역시방자치단체장은 제5조의</u> 폐지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u>제8조의</u>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대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전환 협의체)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시·도지사는</u> 폐지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u>시행계획</u> 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대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지역활성화 사업) ① (생 략) ②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u>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지역활성화 사업) ① (생 략) ②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시·도지사</u>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시·도지사</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u>시·도지사</u>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	---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